

95. 3. 3

패륜형 죽인 동생 석방

어머니를 상습폭행하는 등 패륜 행위를 한 형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5년의 실형이 선고된 동생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.

서울고법 형사5부(재판장 유현 부장판사)는 2일 어머니를 상습폭행해 온 형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선(28)씨에 대해 형의 패륜행위에 분개해 순간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감안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신씨를 석방했다.

재판부는 판결문에서 "친형을 때려 숨지게 한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나 숨진 형이 평소 술에 취해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아버지의 제사상을 발로 차 오는 등 패륜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"며 "피고인의 어머니 등 가족들이 피해자의 패륜행위를 탓하며 피고인의 석방을 간절히 탄원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때 1심 판결은 너무 무겁다"고 밝혔다.

신승근 기자